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해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182

발의연월일: 2024. 12. 31.

발 의 자: 박해철 • 추미애 • 복기왕

임미애 · 서영석 · 정태호

전현희 · 한민수 · 김 윤

박홍배 • 한준호 • 김태선

송옥주·김영환 의원

(14위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업무상 재해 등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업주에게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, 사업주가 자료 제공을 거부할 경우 처벌조항이 없어 일부 사용자들이 산재보험 신청을 위한 자료 제공을 회피하는 등 신속하고 공정한 재해 보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또한, 산업재해 발생 시, 피해노동자 또는 그 유족이 산업재해의 인 과관계를 상세히 밝히기 위해서는 단순 증명자료 외에 추가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, 사업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기 위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,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경우 대통

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서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상 재해 조사 및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(안 제116조 및 제127조).

법률 제 호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6조제2항 중 "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하여야"를 "증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해당 증명 또는 자료를 제공하여야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증명을"을 "증명 또는 자료 제공을"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"정보의"를 "정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증명,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27조제3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4. 제1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의 증명 또는 자료의 제공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사업주
 - 5. 제1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 및 자료의 제공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플랫폼 운영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16조(사업주 등의 조력) ①	제116조(사업주 등의 조력) ①		
(생 략)	(현행과 같음)		
②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	②		
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			
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	<u>증명 또는 대통</u>		
명을 하여야 한다.	령령으로 정한 자료의 제공을		
	요청하면 해당 증명 또는 자료		
	<u>를 제공하여야</u>		
③ 사업주의 행방불명, 그 밖의	③		
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			
증명이 불가능하면 그 <u>증명을</u>			
생략할 수 있다.	<u>증명 또는 자료 제공을</u>		
	,		
④ 제91조의15제2호에 따른 플	4		
랫폼 종사자는 보험급여를 받			
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무제			
공 내용, 노무대가 및 시간에			
관한 자료 또는 이와 관련된			
<u>정보의</u> 제공을 제91조의15제3	<u>정보 및 대통령</u>		
호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에게	령으로 정하는 자료의		
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			
을 받은 플랫폼 운영자는 특별			
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			

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제127조(벌칙) ① • ② (생 략)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 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.

1. ~ 3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④ (생 략)

<u></u>	 제2항	 및	 제4항에	 따른	 증
- 명,	정보	또는	: 자료의	제공	절

(5)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증명,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27조(벌칙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- (3) -----
- 1. ~ 3. (현행과 같음)
- 4. 제1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 험급여를 받을 사람의 증명 또는 자료의 제공 요청을 따 르지 아니한 사업주
- 5. 제1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 및 자료의 제공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플랫폼 운영자
- ④ (현행과 같음)